

2-1-3 대학원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예수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두는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원의 종류) 본교에 일반대학원인 대학원을 둔다.

제3조(대학원의 과정) 대학원에 <별표 1>과 같이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제4조(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 2 장 입학.편입학.재입학.등록.휴학.복학 및 제적

제5조(입학시기)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또는 입학일 이전 취득 예정자<신설 2023.2.7.>

제7조(입학지원절차)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 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4.2.1.>

제8조(입학전형) ①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입학지원서류심사, 구술시험, 면접 등으로 시행한다.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4.2.1.>

제9조(입학허가) 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

제10조(입학전공분야)<삭제 2023.2.7.>

제11조(편입학) ①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학위과정 제3학기로의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편입학하는 학생은 입학정원 외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 각 대학원의 학부 또는 학과에서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편입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재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총장이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② 재입학을 한 학생에게는 퇴학 또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등록) ① 대학원 등록의 종류와 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등록 : 수업연한 내에서 교과목 또는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
2. 입학등록·편입학등록·재입학등록 :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원하는 학생
3. 연구등록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논문제출자격 또는 학위논문대체 인정 심의 자격을 재부여받은 학생 중 논문 및 연구보고서 지도만 필요한 경우

나. 가 목 외 추가학점 이수가 필요한 경우 학점등록을 포함한다.

4. 학점등록 : 수업연한 내에 소정의 학점(P/F교과 포함)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수료자 중 학위논문대체를 위하여 교과목을 이수하려는 학생

[전문개정 2025.12.2.]

제13조의2(정규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4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매학기 초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 수료자 중 연구등록 또는 학점등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

제13조의3(연구등록 및 학점등록) ①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경우 논문 및 연구보고서 제출학기에 연구등록하여야 하며, 연구등록금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1/4로 한다.

②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매 학기 다음과 같이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

1. 3학점 이하 : 수업료의 1/3
2. 6학점 이하 : 수업료의 2/3
3. 7학점 이상 : 수업료 전액

③ 제13조 제1항 제3호의 나 목에 해당하는 연구등록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연구등록금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납입금을 추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단, 해당 납입금은 수업료 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5.12.2.]

제14조(휴학) ① 질병, 병역, 임신·출산·육아, 창업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4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6.9.7.>

② 휴학기간은 1회에 두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2.7.>

③ 휴학기간은 모두 합하여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임신·출산·육아 기간(통산 2학기 이내) 및 창업기간(통산 2학기)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2학기까지,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을 휴학기간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9.7., 2023.2.7.>

④ 휴학기간은 재학년한 및 학위청구논문 제출년한(이하 “논문제출년한”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단, 병역, 임신·출산·육아, 창업 등의 사유로 승인된 휴학은 그 기간을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7.>

제15조(복학) 휴학을 한 학생이 복학을 원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제16조(퇴학) 퇴학을 원하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퇴학할 수 있다.

제17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장이 제적한다.

1.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
4. 재학년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제 3 장 수업년한, 교과과정, 학점, 성적 및 수료

제18조(수업년한·재학년한) 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수업년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9.7.22.>

② 대학원 과정의 재학년한은 논문제출년한과 같다.

제19조(교과과정 및 수업운영) ①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② 대학원의 학년, 학기, 수업일수 등은 본교 학칙에 따른다.

③ 교과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격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원격수업과 관련된 사항은 본교 원격수업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12.2.]

제20조(수료인정 및 이수학점)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수업년한 이상을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각각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③ 일반대학원 석사 학위청구논문 대체인정 심의 신청자의 추가 이수학점은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3.1., 2025.12.2.>

제21조(학기당 취득학점) 대학원 학위과정의 학생은 한 학기에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단,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16.7.22.>

제22조(보충과목 이수)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제 20조 규정이 정하는 수료학점 이외에 추가로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학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①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가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에 6학점까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 학생이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에 6학점까지 당해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국내외 다른 학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① 대학원의 학생이 국내외 다른 학교의 대학원에서 입학전이나 재학중에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수료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4.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라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년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제25조(학업성적) ①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본교 학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유효성적과 수료성적) 학업성적은 강의시간의 6분의 5 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C이상인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총 평균성적이 3.00 이상이어야 한다.

제 4 장 학위수여

제27조(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① 대학원 과정에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한 때에는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25.12.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과정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 대체인정 심의를 통과한 경우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3.1., 2025.12.2.>

③ 석사학위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총장이 수여한다.<신설 2024.2.1.>

제27조의2(학위논문대체인정) ①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는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학위논문 대체 인정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개정 2019.7.22., 2025.12.2.>

②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학위청구논문대체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19.7.22.>

[본조신설 2019.3.1.]

제28조(학위청구논문 등 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또는 학위청구논문 대체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3.1., 2019.7.22., 2022.2.17., 2023.7.3., 2024.2.1., 2025.12.2.>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단, 학위청구논문 대체심사 신청의 경우 제20조제3항에 따른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학부에서 지정하는 논문작성 관련 교과를 수강한 자
4.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영어교과목을 이수(P/F)한 자 또는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에 따른 공인영어 점수를 제출한 자

제28조의2(국내외 전문학술지 발표 논문에 대한 학위청구논문 자격 부여)<삭제 2025.12.2.>

제29조(논문제출년한 등) 대학원의 학생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7년 이내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30조(학위논문·대체인정 제출자격 재부여) 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논문 제출년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1회에 한하여 학위논문·대체인정 제출자격 재부여 신청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제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제28조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해당자격을 충족한 후 재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3.7.3., 2025.12.2.>

② 학위논문·대체인정 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개시 1개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제13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2.3.10., 2023.7.3., 2025.12.2.>

③ 학위논문·대체인정 제출자격 재부여 신청 시 신청한 학위청구 방법은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25.12.2.>

제30조의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에 대한 특례) <삭제 2023.7.3.>

제31조(논문제출 자격시험) 제28조 제2호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4.2.1.>

제32조(학위청구논문 심사)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개정 2025.12.2.>

②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4.2.1.>

제33조(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로 학위를 수여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의2(학위청구신청 방법)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 또는 학위청구논문대체

예정자는 3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전공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학위청구신청방법 예정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위청구의 신청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전공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학위청구방법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12.2.>

③ 학위청구방법의 변경을 신청한 자 중 연구등록 및 학점등록이 필요한 경우 제13조의3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

[본조신설 2019.7.22.]

제 5 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34조(학생지도) 대학원 학생은 이 학칙을 준수하고 소속 대학원장, 학과주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징계) ① 대학원의 학생이 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징계한다.

② 징계의 종류는 견책, 근신(근로봉사),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36조(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대학원위원회 및 직제

제37조(대학원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① 본교에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2.13>

②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2.13>

제38조(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4.8., 2025.12.2.>

1. 입학, 수료 및 학위청구논문 대체 인정 심의,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위과정, 학과, 전공의 설치·폐지와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및 대학원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각종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장학 사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8조의2(주임교수) ① 대학원 학과의 학사 운영을 위하여 주임교수를 두며, 자격,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4.8., 2024.2.1.>

제 7 장 보 칙

제39조(준용규정) 학기, 수업일수, 휴업일, 수업료 기타 납입금 등에 관한 사항 및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과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개정 2024.2.1.>

제40조(학칙개정 절차) ① 대학원 학칙 개정은 대학의 학칙개정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4.2.1.>

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제27조의2, 제28조는 고등교육법 개정(2017.5)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는 고등교육법 개정(2017.5)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1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2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5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27조, 제27조의2는 고
등교육법 개정(2017.5)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별표1]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학과,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개정 2021.11.16>
(제3조, 제4조 및 제27조 관련)

계 열	석 사 학 위 과 정		
	학 과	학 위	입학정원
자연과학계열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10
총계	1학과		10

[별표2] 학위청구논문 등 제출 자격 취득을 위한 대학원 개설 영어교과목
<개정 2022.2.17.><삭제 2024.2.1.>

[별표3] 학위청구논문 등 제출 자격 취득을 위한 공인영어점수 기준
<개정 2022.2.17.><삭제 2024.2.1.>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4.2.1.>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에서 ○○학과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학 석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예수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인)
위 증명에 의하여 ○○학 석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예수대학교 총장 학위 ○ ○ ○ (인)

학위번호: 예수대 ○○○○ 석 ○○○○ (○○)석 제 호